'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7. 4

다. 심 사 기 간 : 2000. 7. 4 (1일간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

나. 제안이유

ㅇ '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.

3. '99 예비비 집행내역 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지출결정액	지출원인행위액	지 출 액	불 용 액
계	1,702,138	1,141,807	1,136,001	1,136,001	5,806
일반회계	1,327,277	1,141,807	1,136,001	1,136,001	5,806
특별회계	374,861	0	0	0	0

4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문 찬 주)

ㅇ 지방자치법 제120조 ②항에 의거 '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임.

ㅇ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
ㅇ '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 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, 지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"생 략"

6. 심사요지

"생 략"

7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